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제작결합의 시정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민자도로 금융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및 연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정건설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건설사업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하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지방권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이동성을 증진하는 모빌리티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교통물류실 밑에 두던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개편하면서 기존 모빌리티정책과, 자동차정책과, 첨단자동차과 및 자동차운행보험과를 각각 모빌리티자동차국 밑에 두며, 모빌리티정책과는 모빌리티총괄과로, 첨단자동차과는 자율주행정책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도심항공교통정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중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되, 정원 1명(4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수도권 민자도로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지방항공청에 초대형 항공교통 관제훈련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명칭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변경하며 그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에서 2025년 3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6급 6명, 7급 5명, 경정 1명) 중 6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은 감축하며,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는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국토교통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택토지실장 소관업무 중 국가공간정보 등 관련 업무는 국토도시실장으로, 청년정책 등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으로 각각 이관하는 등 국토교통부 하부조직 일부를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인력 11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9급 2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정원 1명(6급 1명), 지방국토관리청 정원 12명(7급 4명, 8급 2명, 9급 6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지방항공청 정원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인력 2명(6급 1명, 8급 1명) 및 항공교통본부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

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및 항공정책실 하부 기구 일부를 정비하고,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신설에 따라 기존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설치한 도심항공정책팀을 폐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에 설치한 스마트도시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31일에서 2025년 1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에 설치한 공정건설추진팀의 명칭을 업무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정건설지원팀으로 변경하며,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생활물류정책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월 20일로 연장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진영국토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소재지 관할 시의 명칭을 반영하여 김해국토관리사무소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99.99. ~ 99.99.)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재정담당관”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청년정책담당관·재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청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2.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3.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4.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5.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 관련 정책·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 관련 정책·계획과 관련된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조정
7.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 관련 실태조사, 연구 및 분석 지원
8.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지원
9. 청년 주택 공급 및 운영의 지원

10.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7조제2항 중 “도시정책관 및 건축정책관”을 각각 “도시정책관, 건축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으로 한다.

같은 조 제6항부터 제21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2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건축문화경관과 및 건축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을 “건축문화경관과 · 건축안전과 · 국토정보정책과 · 공간정보제도과 · 공간정보진흥과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으로 한다.

⑥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7호부터 제7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같은 조에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③ 국토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입안 및 연구 · 발전
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령의 입안 · 운영 및 제도의 연구 · 발전
3. 국가공간정보체계(NSDI)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변경 및 조정
4.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의 총괄 · 조정
5.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예산편성 · 심의 · 조정에 관한 사항

6.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운영
 7. 기본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8.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추진
 9. 공간정보체계 구축 관련 국가지원연구과제 수행
 10.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1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2. 공간정보체계 구축의 보안에 관한 사항
 13.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4.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집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5. 관리기관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6. 공간정보체계의 중복구축 방지 및 호환성 확보에 관한 기준·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18. 국가공간정보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총괄·조정
 19. 공간정보 활용 신기술 연계사업 기획
- ㉔ 공간정보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제도의 연구·발전
 2. 국가측량 및 지적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3.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4.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측량단일화 및 지적조사·등록방안 연구
 5. 측량·지적 제도의 일원화 방안
 6. 공간정보 기술자격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운영 지원
 8. 지적측량수행자 및 관련 비영리법인의 등록·지도·감독
 9. 지적측량 수수료체계의 운영·고시 및 개선
 10.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정보화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11. 3차원 지적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 미등록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13. 전국 지적통계의 작성 및 운영
 14.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관리에 관한 사항
 15. 중앙지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전환에 관한 사항
 17.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계획의 수립·시행
 18. 측량·지적제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국가기준점·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최신 측량기술개발·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1. 디지털 지적 표준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 ㉕ 공간정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공간정보산업진흥법령의 입안·운영 및 제도의 연구·발전
 3. 3차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실내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보 분야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6. 공간정보 활용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7.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혁신 성과의 활용계획의 수립·시행
 8. 공간정보 전용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공간정보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0.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운영 지원
 11.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12. 지하시설물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건설 시추정보 전산화에 관한 사항
 14. 공간정보산업 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15.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개발 및 서비스
 17. 공간정보체계 표준화 및 품질인증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8.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극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0. 스마트 국토 엑스포(Smart Geospatial Expo)의 개최·홍보
- ㉔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2. 국토관련정보 및 시스템의 연계방안 연구
3. 국가공간정보센터 관련 법령의 입안·운영 및 제도의 연구·발전
4. 국토정보관련 시스템의 코드체계 표준 제정·관리
5. 국토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 및 관리
6. 국가공간정보센터 관련 실무협의회 운영
7. 공간정보체계에 대한 유통정책 및 제도의 수립
8. 공간정보의 유통을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9. 공간정보의 수집·가공·심사·승인 및 기본통계의 생산
10. 국가공간정보의 개방·공유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1. 온나라부동산포털의 운영
12.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 국가공간정보 및 부동산정보의 종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개발, 운영 및 관리
15.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의 운영·관리
1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운영·관리
17.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관리
18. 공간정보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19. 공간정보 이용·활용의 촉진을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개발 정책수립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0. 공간정보 가공유통업 지원 제도의 수립·운영

21. 공간정보 생산·수집·가공·유통 등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2. 공간 빅데이터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을 각각 “주거복지정책관 및 토지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7항 중 “주거복지지원과·청년정책과”를 “주거복지지원과”로 하고, “부동산산업과”를 “부동산투자제도과”로 하며, “부동산개발정책과·국토정보정책과·공간정보제도과·공간정보진흥과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을 “부동산개발산업과를 두며, 각 과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1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8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산업과장”을 “부동산투자제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4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토지비축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9.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및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20. 부동산개발금융 관련 제도의 연구·발전

21. 택지개발관련 금융기법의 연구

같은 조 제20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동향 및 권리금 현황 조사·발표

같은 조 제2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을 “부동산개발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제24호, 제25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3호부터 제3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34. 공인중개사협회 및 협회 관련 공제사업 지도·감독

35.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제도 및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36.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37. 부동산중개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제도 운용

38. 부동산 거래 관련 결제대금예치 제도 도입 및 운영

39.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같은 조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 중 “공정건설추진팀”을 각각 “공정건설지원팀”으로 하고, “두되”를 “두며”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정건설추진팀장”을 “공정건설지원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종합교통정책관, 물류정책관 및 자동차정책관”을 각각 “종합교통정책관 및 물류정책관”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제15호까지, 제15호의2, 제16호”를 “제11호까지, 제14호,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버스정책과·모빌리티정책과”를 “교통서비스정책과”로, “첨단물류과·물류

산업과 · 자동차정책과 · 첨단자동차과 및 자동차운영보험과를”을 “첨단
물류과 · 물류산업과 및 생활물류정책팀을”로, “으로”를 “으로, 생활물류
정책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로 각
각 한다.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버스정책과장”을 “교통서비스정책과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택시운송사업, 광역급행형”을
각각 “광역급행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7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7.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 시행
- 28.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29. 택시의 수송력 공급 기준에 관한 사항
- 30.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 31. 택시 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 · 육성 및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 32. 택시운송사업의 진흥 · 발전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연구 · 개발
- 33.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3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
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허가, 면허, 등록에 관한 사항
- 35.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
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운임, 요금 등 신고에 관한 사항
- 36.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10항,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정책·제도 총괄
2.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에 관한 사항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6.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령의 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생활물류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 중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5호까지의”를 “제45호까지, 제62호부터 제66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7호부터 제66호까지의”를 “제16호에서 제20호까지, 제47호부터 제61호까지의”로 한다.

같은 조 제6항 중 “항공산업과·항공보안과·도심항공정책팀”을 “항공산업과·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으로 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공항정책과·공항안전환경과·항행시설과”를 “항행위성정책과·공항정책과·공항안전환경과·항공보안정책과”로 하며, “도심항공정책팀장·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장”을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

확팀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11항을 제20항으로 하고, 제20항(종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보안과장”을 “항공보안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을 제17항으로 하고, 제17항(종전의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행시설과장”을 “항행위성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2(모빌리티자동차국) ①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모빌리티총괄과·자동차정책과·자율주행정책과·도심항공교통정책과·자동차운영보험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모빌리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이동성을 증진하는 모빌리티(이하 “모빌리티”라 한다)에 관한 정책 총괄·조정
2. 모빌리티 관련 정책 개발 및 제도 운영
3. 모빌리티의 개발, 보급, 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5.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육상·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정책의 총괄·조정
7. 육상·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운영
8. 육상·항공교통 분야 국가교통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9. 육상·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품질인증 관련 제
도의 운영 및 개선
10. 육상·항공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 업체·단체·협회의
육성 및 지원
11. 육상·항공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운영에 관
한 사항
13. 교통데이터의 연계·융합 분석 및 시스템에 관한 사항
14. 신교통시스템 관련 정책 개발 및 제도 운영
15. 신교통시스템의 개발, 보급, 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6. 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지원
17. 교통신기술의 지정·고시, 활용촉진·보급 및 제도 운용
18. 교통기술의 표준화 및 시범사업의 추진
19. 자동차 대여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20.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22.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모빌리티자동차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자동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 관리·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수립, 연구 및 총괄·조정

2. 자동차 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자동차 관리의 특례에 관한 업무

4. 자동차의 차종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및 육성

6. 주요 교역국과의 자동차 안전 및 관리정책 관련 양자협력

7. 자동차기술장벽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및 합의사항 이행

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교통분과위원회 운영

9. 자동차 튜닝승인제도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및 부품 인증제도 개선·운영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사후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시정 및 이에 대한 과징금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4.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15. 결함 있는 자동차의 운행 제한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 부품제작자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17. 대체부품 인증 제도 운영 및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시행하는 경제적 보상에 관한 사항
19.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및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2.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3.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운영
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 확대 지원
26.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지원·운영
27. 자동차·이륜자동차·부품 및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기준의 제정 및 운영
28.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연구
29. 자동차기술·안전 국제조화기구(UN/ECE/WP.29) 대응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자동차안전기준 조화기구(APEC/VSHG) 의장국 역할 수행 등에 관한 사항
30.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관한 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1. 자동차 기술·안전 관련 정부·업계 간 회의 및 각종 학회 등 대응
에 관한 사항

32.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3. 자동차 안전도 평가 제도의 운영

⑤ 자율주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안전 및 운행인프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
원에 관한 사항

5.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운영

6.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협력주행시스템, 정밀도로지
도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8.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
운영 및 활용에 대한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12.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3. 자율주행교통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4.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화물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
16.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한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이하 이 항에서 “도심항공교통체계”라 한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도심항공교통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심항공교통체계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
4. 도심항공교통체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집행 및 관리
5. 도심항공교통체계와 다른 교통 체계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도심항공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심항공교통체계 관련 전문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심항공교통체계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⑦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의 등록 및 저당권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2. 자동차 등록 제도의 운영
3.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4. 이륜자동차 사용(변경) 신고·사용폐지제도 운영 및 개선
5. 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 운영 및 개선
6. 온-오프라인 거래·알선 등록기준 및 절차 등 제도 운영
7.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에 따른 소비자 피해근절에 관한 사항
8.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지도·감독
9. 자동차폐차업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폐자동차 부품 재활용대책 수립
11. 자동차관리 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전산정보 이용승인 및 연계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관리사업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검사·자동차 내압용기검사 기준·방법 설정 및 개선에 관한 제도 운영
16. 자동차 종합검사 기준·방법 설정 및 개선·보완에 관한 제도 운영
17. 택시미터 검정기준·방법 등 검정제도 운영
18.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대상 및 기준·방법 등 제도 운영
19. 이륜자동차 관리사업·검사 제도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지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손해배상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운영

23. 자동차 책임보험 분담금 관리자, 정부보장사업자 및 의무보험가입
관리전산망 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
24.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정리위원회 구성·운영
25.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 운영
26.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지도·감독
27. 자동차사고 입원환자 외출·외박 관리 및 진료기록부 검사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책 및 자동차 사고 피해자 등 지
원사업 운영
29. 자동차보험 정비수가제도 관리·운영
30. 자동차책임보험 표준약관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31.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시설의 설치운영
32.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사업 체계 및 제도개선
33.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4. 재활시설 위탁운영자 지도·감독
35. 자동차 의무보험(공제)의 가입관리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관한 업무
36.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공제제도 운영, 공제조합 인가 및
지도·감독
37. 운수사업자단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38. 자동차번호판 제도에 관한 사항

제22조제2항 중 “진영국토관리사무소”를 “김해국토관리사무소”로 한다.

제60조의3 제목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각각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한다.

제61조제5항 중 “2022년”을 “2024년”으로 한다.

별표 2 국토관리사무소 명칭 중 “진영국토관리사무소”를 “김해국토관리사무소”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000”을 “1,006”으로 하고, 일반직 계 “989”를 “995”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0”을 “61”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9”를 “28”로 하며,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5”를 “57”로 하고, 행정사무관 “87”을 “85”로 하며, 시설사무관 “57”을 “58”로 하고,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사서주사 “63”을 “65”로 하며,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8”을 “10”으로 하고, 행정주사 “91”을 “90”으로 하며, 시설주사 “59”를 “62”로 하고,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8”을 “1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삭제하고, 철도경찰서기보·행정서기보·통계서기

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항공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사서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7”을 “6”으로 하며,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004”를 “1,0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993”을 “999”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0”을 “61”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9”를 “28”로 하며,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5”를 “57”로 하고, 행정사무관 “89”를 “87”로 하며, 시설사무관 “58”을 “59”로 하고,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사서주사 “61”을 “63”으로 하며,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8”을 “10”으로 하고, 행정주사 “80”을 “79”로 하며, 시설주사 “58”을 “61”로 하고,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9”를 “11”로 하며, 행정주사보 “21”을 “20”으로 하고, 철도경찰서기보·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항공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사서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7”을 “6”으로 하고,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8 중 총계 “31”을 “3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1”을 “30”으로 하며,

공업주사 “1”을 삭제한다.

별표 9 중 총계 “1,357”을 “1,347”로 하고, 일반직 계 “1,357”을 “1,347”로 하며, 시설주사 “151”을 “152”로 하고, 공업주사보 “28”을 “27”로 하며, 시설주사보 “221”을 “219”로 하고, 전산서기 “7”을 “6”으로 하며, 기계운영서기 “26”을 “25”로 하고, 방송통신서기보 “2”를 “1”로 하며,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93”을 “189”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59”를 “58”로 한다.

별표 9의2 중 총계 “1,357”을 “1,347”로 하고, 일반직 계 “1,357”을 “1,347”로 하며, 시설주사 “144”를 “145”로 하고, 공업주사보 “28”을 “27”로 하며, 시설주사보 “216”을 “214”로 하고, 전산서기 “7”을 “6”으로 하며, 기계운영서기 “26”을 “25”로 하고, 방송통신서기보 “2”를 “1”로 하며,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93”을 “189”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59”를 “58”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509”를 “507”로 하고, 일반직 계 “509”를 “507”로 하며, 철도경찰주사보 “163”을 “162”로 하고, 철도경찰서기 “197”을 “196”으로 한다.

별표 11의2 중 총계 “509”를 “507”로 하고, 일반직 계 “509”를 “507”로 하며, 철도경찰주사보 “161”을 “160”로 하고, 철도경찰서기 “197”을 “196”으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616”을 “6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16”을 “613”으로 하며, 항공주사 “164”를 “165”로 하고, 행정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을 “2”로 하고, 항공주사보 “172”를 “170”으로 하며, 행정서기 “14”를 “13”으로 한다.

별표 12의2 중 총계 “616”을 “6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16”을 “613”으로 하며, 항공주사 “162”를 “163”으로 하고, 행정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을 “2”로 하며, 항공주사보 “172”를 “170”으로 하며, 행정서기 “14”를 “13”으로 한다.

별표 16 중 총계 “131”을 “129”로 하고, 일반직 계 “131”을 “12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30”을 “128”로 한다.

별표 16의2 중 총계 “338”을 “337”로 하고, 일반직 계 “338”을 “33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37”을 “336”으로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주택토지실 주거복지 지원과	8명 (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2023년 3월 31일까지
2) 기획조정실 청년정책 담당관	4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3) 주택토지실 공공주택 정책과	10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 급 1명, 5급 5명, 6급 3명)	2023년 3월 31일까지
4) 철도국 수도권광역급 행철도과	3명 (5급 1명, 6급 2명)	2023년 9월 30일까지
5) 모빌리티자동차국 도 심항공교통정책과	3명 (4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61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시설사무관	1
시설주사	2

국토교통부령 제58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월 20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69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3년”을 “2025년”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4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공정건설추진팀”을 “공정건설지원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정건설추진팀장”을 각각 “공정건설지원팀장”으로 하며, 제3항 중 “항공안전정책과장”을 “국제항공과장”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12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 중 생활물류정책팀 신설 관련내용과 제11조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 정원 11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9급 2명),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정원 1명(6급 1명), 지방국토관리청 정원 12명(7급 4명, 8급 2명, 9급 6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지방항공청 정원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국토지리정보원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 항공교통본부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생활물류정책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생활물류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생활물류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물류산업과장이 분장한다.

[별표 18]

국토교통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60조의3제2항 관련)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존속기한: 2025년 3월 31일)

총계	13
일반직 계	1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세무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특정직 계	1
경정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획조정실) ① ~ ④ (생략)	제7조(기획조정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u>규제개혁법무담당관</u> · <u>재정담당관</u> · 미래전략담당관 · 국제협력통상담당관 · 정보화통계담당관 · 정보보호담당관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 ----- <u>규제개혁법무담당관</u> · <u>청년정책담당관</u> · <u>재정담당관</u> ----- ----- ----- ----- ----- ----- ----- ----- ----- -----.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⑨ <u>청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국토교통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 · 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u>
	2. <u>국토교통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 · 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u>
	3. <u>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 계획</u>

	<u>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u> <u>4.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u> <u>5.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 관련 정책·계획의 수립 및 관리</u> <u>6.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 관련 정책·계획과 관련된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조정</u> <u>7.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 관련 실태조사, 연구 및 분석 지원</u> <u>8.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지원</u> <u>9. 청년 주택 공급 및 운영의 지원</u> <u>10.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u> <u>11. 그 밖에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u>
⑨ ~ ⑭ (생략)	⑩ ~ ⑮ (현행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
제7조(국토도시실) ① (생략)	제7조(국토도시실)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도시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토정책관, 도시정책관 및 건축정책관으로 하며, 국토정책관, 도시정책관 및 건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신설>

⑥ 국토도시실에 국토정책과 · 수도권정책과 · 지역정책과 · 산업입지정책과 · 복합도시정책과 · 도시정책과 · 도시경제과 · 도시활력지원과 · 녹색도시과 · 스마트도시팀 · 건축정책과 · 녹색건축과 · 건축문화경관과 및 건축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

음)

② -----

-----도시정책관,
건축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
-----도시정책관,
건축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7호부터 제7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

-----건축문화경관과 · 건축안전과 · 국토정보정책과 · 공간정보제도과 · 공간정보진흥과 및

관으로, 스마트도시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⑳ (생략)

<신설>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

⑧ ~ ㉒ (현행 제7항에서 제21항까지와 같음)

㉓ 국토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입안 및 연구 · 발전
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령의 입안 · 운영 및 제도의 연구 · 발전
3. 국가공간정보체계(NSDI)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변경 및 조정
4.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의 총괄 · 조정
5.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예산편성 · 심의 · 조정에 관한 사항
6.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운영
7. 기본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 조정
8.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추

진

9. 공간정보체계 구축 관련 국
가지원연구과제 수행
10.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1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12. 공간정보체계 구축의 보안
에 관한 사항
13.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공
간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
항
14.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집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5. 관리기관의 공간정보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6. 공간정보체계의 중복구축
방지 및 호환성 확보에 관한
기준·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협력체
계의 구축
18. 국가공간정보 분야 연구개
발사업의 총괄·조정
19. 공간정보 활용 신기술 연계

<신 설>

사업 기획

②4 공간정보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제도의 연구·발전
2. 국가측량 및 지적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3.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4.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측량단일화 및 지적조사·등록방안 연구
5. 측량·지적 제도의 일원화 방안
6. 공간정보 기술자격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운영 지원
8. 지적측량수행자 및 관련 비영리법인의 등록·지도·감독
9. 지적측량 수수료체계의 운영·고시 및 개선
10.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정보화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 11. 3차원 지적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12. 미등록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13. 전국 지적통계의 작성 및 운영
- 14.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관리에 관한 사항
- 15. 중앙지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6.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전환에 관한 사항
- 17.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18. 측량·지적제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9. 국가기준점·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0. 최신 측량기술개발·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21. 디지털 지적 표준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 ㉔ 공간정보진흥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공간정보산업진흥법령의 입
안·운영 및 제도의 연구·발
진

3. 3차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
용에 관한 사항

4. 실내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
용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보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
행

6. 공간정보 활용 창업 활성화
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7.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혁신
성과의 활용계획의 수립·시
행

8. 공간정보 전용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공간정보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0.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운영 지원

11.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신 설>

12. 지하시설물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건설 시추정보 전산화에 관한 사항

14. 공간정보산업 조사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15.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개발 및 서비스

17. 공간정보체계 표준화 및 품질인증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시행

18.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극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0. 스마트 국토 엑스포(Smart Geospatial Expo)의 개최 · 홍보

㉔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유지 · 관리

2. 국토관련정보 및 시스템의 연계방안 연구

3. 국가공간정보센터 관련 법령
의 입안·운영 및 제도의 연
구·발전
4. 국토정보관련 시스템의 코드
체계 표준 제정·관리
5. 국토정보시스템의 운영·유
지 및 관리
6. 국가공간정보센터 관련 실무
협의회 운영
7. 공간정보체계에 대한 유통정
책 및 제도의 수립
8. 공간정보의 유통을 위한 기
구의 설치·운영
9. 공간정보의 수집·가공·심
사·승인 및 기본통계의 생산
10. 국가공간정보의 개방·공유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1. 온나라부동산포털의 운영
12.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 국가공간정보 및 부동산정
보의 종합관리 및 운영에 관
한 사항
14.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의 개발, 운영 및 관리
15.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

	<u>SS)의 운영·관리</u> <u>1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운영·관리</u> <u>17.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관리</u> <u>18. 공간정보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관리</u> <u>19. 공간정보 이용·활용의 촉진을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개발 정책수립 및 활성화 방안</u> <u>에 관한 사항</u> <u>20. 공간정보 가공유통업 지원 제도의 수립·운영</u> <u>21. 공간정보 생산·수집·가공·유통 등 활성화 방안</u> <u>에 관한 사항</u> <u>22. 공간 빅데이터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u>
제8조(주택토지실) ① (생략)	제8조(주택토지실)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토지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주택정책관, <u>주거복지정책관</u> , <u>토지정책관</u> 및 <u>국토정보정책관</u> 으로 하며, 주택정책관, 주	② ----- ----- ----- ----- <u>주거복지정책관</u> 및 <u>토지정책관</u> ----- ----- <u>주거복지</u>

거북지정책관, 토지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⑥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0호부터 제7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주택토지실에 주택정책과 · 주택기금과 ·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정비과 · 주택임대차지원팀 · 주거복지정책과 · 주거복지지원과 · 청년정책과 · 공공주택정책과 · 민간임대정책과 · 토지정책과 · 부동산산업과 · 부동산평가과 · 부동산개발정책과 · 국토정보정책과 · 공간정보제도과 · 공간정보진흥과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두며, 각 과장과 센터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정책관 및 토지정책관-----

-----.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⑦ -----

-----주거복지

지원과-----

부동산투자제도과 -----

- 부동산개발산업과를 두며, 각

과장 -----

-----.

⑧ ~ ⑭ (생 략)

⑮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2.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3.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4.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5. 청년 주거지원 관련 정책·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청년 주거지원 정책·계획과 관련된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조정
7. 청년 주거지원 관련 실태조사, 연구 및 분석
8. 청년 주거지원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9. 청년 주택 공급 및 운영의 지원
10. 청년 1인 가구 주거지원에

⑧ ~ ⑭ (현행과 같음)

<삭 제>

관한 사항

10의2.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
영 지원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 소관 청
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
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
항

①⑥ · ①⑦ (생략)

①⑧ 토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략)

<신설>

①⑨ 부동산산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2. 공인중개사협회 및 협회 관
련 공제사업 지도·감독

3.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제도
및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
회 운영

4.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 단속

①⑥ · ①⑦ (현행과 같음)

①⑧ -----
-----.

1. ~ 17. (현행과 같음)

18.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
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⑨ 부동산투자제도과장-----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u>5. 부동산중개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제도 운용</u> <u>6. 부동산 거래 관련 결제대금 예치 제도 도입 및 운영</u> <u>7.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u> 8. ~ 13. (생략) <u>14. 부동산산업 관련 국제협력 에 관한 사항</u> 15. · 16. (생략) <u>17.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동향 및 권리금 현황 조사·발표</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② 부동산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u><신설></u>	<u><삭제></u> <u><삭제></u> <u><삭제></u> 8. ~ 13. (현행과 같음) <u><삭제></u> 15. · 16. (현행과 같음) <u><삭제></u> <u>18. 토지비축제도의 운영 및 연 구·발전</u> <u>19.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및 공 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u> <u>20. 부동산개발금융 관련 제도 의 연구·발전</u> <u>21. 택지개발관련 금융기법의 연구</u> ② ----- -----. 1. ~ 13. (현행과 같음) <u>14.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동향 및 권리금 현황 조사·발표</u>
---	--

②①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택지개발관련 금융기법의 연구

14. ~ 23. (생략)

24. 토지비축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25.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및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

26. (생략)

27. 부동산개발금융 관련 제도의 연구·발전

28. ~ 3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① 부동산개발산업과장-----
-----.

1. ~ 12. (현행과 같음)

<삭제>

14. ~ 23.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26. (현행과 같음)

<삭제>

28. ~ 32. (현행과 같음)

33.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34. 공인중개사협회 및 협회 관련 공제사업 지도·감독

35.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제도 및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36.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37. 부동산중개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제도 운용

38. 부동산 거래 관련 결제대금

<신 설>

② 국토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1의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제도의 연구·발전

2. 국가공간정보체계(NSDI)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조정

3.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의 총괄·조정

4.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예산편성·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5.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운영

6. 기본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7. 삭제

8.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추진

9. 삭제

10. 공간정보체계 구축 관련 국

예치 제도 도입 및 운영

39.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삭 제>

가지원연구과제 수행

11.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14. 공간정보체계 구축의 보안
에 관한 사항

15.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공
간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
항

16.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집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7. 관리기관의 공간정보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8. 공간정보체계의 중복구축
방지 및 호환성 확보에 관한
기준·운영 등에 관한 사항

19.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협력체
계의 구축

20. 삭제

21. 국가공간정보 분야 연구개
발사업의 총괄·조정

② 공간정보제도과장은 다음 사

＜삭 제＞

항을 분장한다.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제도의 연구·발전
2. 국가측량 및 지적에 관한 정
책의 수립·조정
3.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4.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측량단일화 및 지적조사·등
록방안 연구
5. 측량·지적 제도의 일원화
방안
6. 공간정보 기술자격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운영
지원
8. 지적측량수행자 및 관련 비
영리법인의 등록·지도·감독
9. 지적측량 수수료체계의 운영
· 고시 및 개선
10.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의 관리 및 정보화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11. 3차원 지적도의 구축에 관
한 사항

12. 미등록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13. 전국 지적통계의 작성 및 운영

14.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관리에 관한 사항

15. 중앙지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전환에 관한 사항

17.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계획의 수립·시행

18. 측량·지적제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국가기준점·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최신 측량기술개발·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1. 디지털 지적 표준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㉔ 공간정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삭 제>

정책의 수립·시행

2. 공간정보산업진흥법령의 입
안·운영 및 제도의 연구·발
전

3. 3차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
용에 관한 사항

4. 실내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
용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보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
행

6. 공간정보 활용 창업 활성화
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7.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혁신
성과의 활용계획의 수립·시
행

8. 공간정보 전용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공간정보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0.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운영 지원

11.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12. 지하시설물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건설 시추정보 전산화에 관
한 사항

14. 공간정보산업 조사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15.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개발
및 서비스

17. 공간정보체계 표준화 및 품
질인증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시행

18.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극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0. 스마트 국토 엑스포(Smart
Geospatial Expo)의 개최 · 흥
보

㉔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
이스의 유지 · 관리

2. 국토관련정보 및 시스템의
연계방안 연구

3. 국가공간정보센터 관련 법령
의 입안 · 운영 및 제도의 연

<삭 제>

구·발전

4. 국토정보관련 시스템의 코드 체계 표준 제정·관리
5. 삭제
6. 국토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 및 관리
7. 국가공간정보센터 관련 실무 협의회 운영
8. 공간정보체계에 대한 유통정책 및 제도의 수립
9. 공간정보의 유통을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10. 공간정보의 수집·가공·심사·승인 및 기본통계의 생산
11. 삭제
12. 국가공간정보의 개방·공유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3. 삭제
14. 온나라부동산포털의 운영
15.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6. 국가공간정보 및 부동산정보의 종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개발, 운영 및 관리

18.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의 운영·관리 19.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운영·관리 20.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관리 21. 공간정보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22. 공간정보 이용·활용의 촉진을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개발 정책수립 및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사항 23. 공간정보 가공유통업 지원제도의 수립·운영 24. 공간정보 생산·수집·가공·유통 등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사항 25. 공간 빅데이터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9조(건설정책국) ① ~ ③ (생략) ④ 건설정책국에 건설정책과·건설산업과·해외건설정책과·해외건설지원과·<u>공정건설추진</u>팀·기술정책과·기술혁신과·건설안전과 및 시설안전과를 두	제9조(건설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공정건설지원</u> 팀----- -----도

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 ⑧ (생략)

⑨ 공정건설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⑩ ~ ⑬ (생략)

제11조(교통물류실)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종합교통정책관, 물류정책관 및 자동차정책관으로 하며, 종합교통정책관, 물류정책관 및 자동차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종합교통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5호의2, 제16호부터 제21호

며-----

----- 공정

건설지원팀-----

-----.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공정건설지원팀장-----

-----.

1. ~ 5. (현행과 같음)

⑩ ~ ⑬ (현행과 같음)

제11조(교통물류실) ① (현행과 같음)

② -----

-- 종합교통정책관 및 물류정

책관-----, 종합교통정책관

및 물류정책관-----

-----.

③ -----

----- 제11호까지,

제14호, 제17호-----

까지 및 제37호부터 제42호까지
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
한다.

④ (생 략)

⑤ 자동차정책관은 「국토교통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
조제3항제43호부터 제56호까지
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
한다.

⑥ 교통물류실에 교통정책총괄
과 · 교통안전정책과 · 버스정책
과 · 모빌리티정책과 · 생활교통
복지과 · 물류정책과 · 첨단물류
과 · 물류산업과 · 자동차정책과
· 첨단자동차과 및 자동차운영
보험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
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으로 보한다.

⑦ · ⑧ (생 략)

⑨ 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택시운
송사업, 광역급행형 · 직행좌
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
-----교통서비
스정책과-----
-----첨단물류과 ·
물류산업과 및 생활물류정책팀
을 -----

-----으로, 생활물류정
책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
로 -----.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교통서비스정책과장-----
-----.

1. -----광역급
행형-----

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u>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도 협의사항에 대한 중재 및 조정</u>	4. ----- <u>광역급행형</u> -----
5. ~ 26. (생략)	-----
<u><신설></u>	5. ~ 26. (현행과 같음)
<u><신설></u>	27. <u>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u>
<u><신설></u>	28. <u>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u>
<u><신설></u>	29. <u>택시의 수송력 공급 기준에 관한 사항</u>
<u><신설></u>	30. <u>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u>
<u><신설></u>	31. <u>택시 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육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u><신설></u>	32. <u>택시운송사업의 진흥·발전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연구·개발</u>
<u><신설></u>	33. <u>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u>

<신 설>

<신 설>

<신 설>

⑩ 모빌리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육상·항공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 정책의 총괄·조정
2. 육상·항공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3. 육상·항공교통 분야 국가교통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4. 육상·항공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 표준화 및 품질인증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허가, 면허, 등록에 관한 사항

35.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운임, 요금 등 신고에 관한 사항

36.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육상·항공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 업체·단체·

협회의 육성 및 지원

6. 육상·항공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

한 사항

7.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

업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8. 신교통시스템 관련 정책 개

발 및 제도 운영

9. 신교통시스템의 개발, 보급,

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0.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동차 통행 감축, 전환

교통에 관한 협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자동차 대여사업제도의 운

영 및 개선

16.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17.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8. 택시의 수송력 공급 기준에
관한 사항
19.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20. 택시 운수사업자단체의 설
립·육성 및 지도·감독에 관
한 사항
21. 택시운송사업의 진흥·발전
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연구·
개발
2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
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
개사업의 허가, 면허, 등록에
관한 사항
2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
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
개사업의 운임, 요금 등 신고
에 관한 사항

25.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
여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
항

26.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정
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27.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령
의 입안 및 제도의 운영·개
선에 관한 사항

28.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⑪ ~ ⑭ (생략)

⑮ 자동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자동차 관리·안전 및 소비
자 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
의 수립, 연구 및 총괄·조정

2. 자동차 관리 관련 법령 및 제
도의 운영 및 개선

3. 자동차 관리의 특례에 관한
업무

4. 자동차의 차종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및 육성

6. 주요 교역국과의 자동차 안

⑪ ~ ⑭ (현행과 같음)

<삭 제>

전 및 관리정책 관련 양자협
력

7. 자동차기술장벽 관련 통상협
상 대응 및 합의사항 이행

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교
통분과위원회 운영

9. 자동차 튜닝승인제도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및 부품 인증제도 개
선·운영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사후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자동차 제작결합조사·시정
및 이에 대한 과징금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15.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16. 결합 있는 자동차의 운행 제
한에 관한 사항

17. 자동차 부품제작자 등의 등
록에 관한 사항

18. 대체부품 인증 제도 운영 및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9. 자동차 시정조치를 갈음하

여 시행하는 경제적 보상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

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에 관한 사항

22. 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및 튜

닝부품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3.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

도 운영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안

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

운영

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

확대 지원

27.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지원·운영

28. 자동차·이륜자동차·부품

및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기준
의 제정 및 운영

29.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연구

30. 자동차기술·안전 국제조화
기구(UN/ECE/WP.29) 대응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자동차안전기준 조화기구(AP
EC/VSHG) 의장국 역할 수행
등에 관한 사항

31.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관한
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32. 자동차 기술·안전 관련 정
부·업계 간 회의 및 각종 학
회 등 대응에 관한 사항

33.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에 관한 사항

34. 자동차 안전도 평가 제도의
운영

⑩ 첨단자동차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추진
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에

<삭 제>

필요한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안전 및 운행인프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첨단 미래형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운영

6.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협력주행시스템,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8.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 분야 지능형교통체
계의 구축·운영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
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 운영 및 활용에 대
한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16.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
항

17. 자율주행교통물류기본계획
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8.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
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19.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
구 내 여객·화물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특례 부
여에 관한 사항

20.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의 등록 및 저장권 관
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삭 제>

2. 자동차 등록 제도의 운영
3.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4. 이륜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 사용폐지제도 운영 및 개선
5. 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 운영 및 개선
6. 온-오프라인 거래 · 알선 등 록기준 및 절차 등 제도 운영
7. 중고자동차 매매 · 알선에 따른 소비자 피해근절에 관한 사항
8.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지도 · 감독
9. 자동차폐차업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폐자동차 부품 재활용대책 수립
11. 자동차관리 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전산정보 이용승인 및 연계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관리사업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에 관

한 사항

15. 자동차검사 · 자동차 내압용
기검사 기준 · 방법 설정 및
개선에 관한 제도 운영
16. 자동차 종합검사 기준 · 방
법 설정 및 개선 · 보완에 관
한 제도 운영
17. 택시미터 검정기준 · 방법
등 검정제도 운영
18. 기계 · 기구의 정밀도검사
대상 및 기준 · 방법 등 제도
운영
19. 이륜자동차 관리사업 · 검사
제도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2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지정
·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손해배상법령 및 제
도의 운영 및 개선
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운영
23. 자동차 책임보험 분담금 관
리자, 정부보장사업자 및 의무
보험가입관리전산망 운영자에
대한 지도 · 감독
24.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정리

위원회 구성·운영

25.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

운영

26.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

의위원회 지도·감독

27. 자동차사고 입원환자 외출

·외박 관리 및 진료기록부

검사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책 및 자동차 사고 피

해자 등 지원사업 운영

29. 자동차보험 정비수가제도

관리·운영

30. 자동차책임보험 표준약관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31.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시설의 설치운영

32.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사업 체계 및 제도개선

33.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구

성 및 운영

34. 재활시설 위탁운영자 지도

·감독

35. 자동차 의무보험(공제)의 가

입관리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

36.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공제제도 운영, 공제조합
인가 및 지도·감독

37. 운수사업자단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38. 자동차번호판 제도에 관한
사항

<신 설>

⑱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정책·제도 총괄

2.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및 소
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
증에 관한 사항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
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
사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6.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
계약서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령
의 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제12조(항공정책실) ① ~ ② (생략)

③ 항공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4호의3,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0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항공안전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2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공항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47호부터 제6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항공정책실에 항공정책과 · 첨단항공과 · 국제항공과 · 항공산업과 · 항공보안과 · 도심항공정책팀 · 항공안전정책과 · 항공운항과 · 항공기술과 · 항공교통

사항

8. 생활물류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2조(항공정책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15호 -----

-----.

④ -----

----- 제45호까지,
제62호부터 제66호까지의 -----
-----.

⑤ -----

--- 제16호에서 제20호까지, 제47호부터 제61호까지의 -----
-----.

⑥ -----
----- 항공산업과 ·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

과 ·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
팀 · 공항정책과 · 공항안전환경
과 · 항행시설과 및 공항건설팀
 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도심항공정책팀장 · 국제민간항
공기구전략기획팀장 및 공항건
설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으로 보한다.

⑦ ~ ⑩ (생략)

⑪ 항공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략)

⑫ 도심항공정책팀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드론을 이용한 사람 또는 화
물의 운송 교통(이하 이 항에
서 “드론교통”이라 한다) 활성
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드론교통 체계의 구축 · 관리
에 관한 사항

3. 드론교통 관련 법령의 제 ·
개정 및 제도 개선

4. 드론교통 관련 연구개발 사
업의 집행 및 관리

-----항행위성정
책과 · 공항정책과 · 공항안전환
경과 · 항공보안정책과 -----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
획팀장 -----

⑦ ~ ⑩ (현행과 같음)

⑫ 항공보안정책과장-----
 -----.

1. ~ 19. (현행과 같음)

<삭제>

5. 드론교통 체계와 다른 교통 체계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드론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드론교통 관련 전문가 협의 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드론교통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⑬ ~ ⑯ (생략)

⑰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⑱ · ⑲ (생략)

⑳ 항행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략)

㉑ (생략)

<신설>

⑬ ~ ⑯ (현행과 같음)

⑪ -----
-----.

1. ~ 7. (현행과 같음)

⑱ · ⑲ (현행과 같음)

⑰ 항행위성정책과장-----
-----.

1. ~ 16. (현행과 같음)

㉑ (현행과 같음)

제12조2(모빌리티자동차국) ①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모빌리티총괄과 · 자동차정책과 · 자율주행정책과 · 도심항공교통정책과 · 자동차운영보험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모빌리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 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이동성을 증진하는 모빌리티 (이하 “모빌리티”라 한다)에 관한 정책 총괄·조정

2. 모빌리티 관련 정책 개발 및 제도 운영

3. 모빌리티의 개발, 보급, 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5.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육상·항공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 정책의 총괄·조정

7. 육상·항공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8. 육상·항공교통 분야 국가교통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9. 육상·항공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 표준화 및 품질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육상·항공교통 분야 지능
형 교통체계 관련 업체·단체
·협회의 육성 및 지원

11. 육상·항공교통 분야 지능
형 교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
업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통데이터의 연계·융합
분석 및 시스템에 관한 사항

14. 신교통시스템 관련 정책 개
발 및 제도 운영

15. 신교통시스템의 개발, 보급,
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6. 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사
업의 관리 및 지원

17. 교통신기술의 지정·고시, 활
용촉진·보급 및 제도 운용

18. 교통기술의 표준화 및 시범
사업의 추진

19. 자동차 대여사업제도의 운
영 및 개선

20.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정

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22.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모빌리티자동차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자동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 관리·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수립, 연구 및 총괄·조정

2. 자동차 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자동차 관리의 특례에 관한 업무

4. 자동차의 차종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및 육성

6. 주요 교역국과의 자동차 안전 및 관리정책 관련 양자협력

7. 자동차기술장벽 관련 통상협
상 대응 및 합의사항 이행
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교
통분과위원회 운영
9. 자동차 튜닝승인제도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및 부품 인증제도 개
선 · 운영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사후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 시정
및 이에 대한 과징금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14.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15. 결함 있는 자동차의 운행 제
한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 부품제작자 등의 등
록에 관한 사항
17. 대체부품 인증 제도 운영 및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 시정조치를 갈음하
여 시행하는 경제적 보상에

관한 사항

19.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및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2.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3.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운영
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 확대 지원
26.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지원·운영
27. 자동차·이륜자동차·부품 및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기준의 제정 및 운영
28.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연구

29. 자동차기술 · 안전 국제조화 기구(UN/ECE/WP.29) 대응 및 아시아 · 태평양 국가 간 자동차안전기준 조화기구(AP EC/VSHG) 의장국 역할 수행 등에 관한 사항

30.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관한 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31. 자동차 기술 · 안전 관련 정부 · 업계 간 회의 및 각종 학회 등 대응에 관한 사항

32.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3. 자동차 안전도 평가 제도의 운영

⑤ 자율주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

가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안전 및 운행인프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첨단 미래형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운영
6.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협력주행시스템,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8.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 운영 및 활용에 대한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12.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
항

13. 자율주행교통물류기본계획
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4.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
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15.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
구 내 여객·화물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특례 부
여에 관한 사항

16.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한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이하 이 항
에서 “도심항공교통체계” 라
한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도심항공교통체계의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심항공교통체계 관련 법령
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

4. 도심항공교통체계 관련 연구
개발 사업의 집행 및 관리

5. 도심항공교통체계와 다른 교
통 체계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도심항공교통체계 관련 산업
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심항공교통체계 관련 전문
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심항공교통체계 관련 국제
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⑦ 자동차운행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의 등록 및 저당권 관
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2. 자동차 등록 제도의 운영

3.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
자가 다른 자동차 발생 방지
를 위한 제도 개선

4. 이륜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 사용폐지제도 운영 및 개선

5. 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 운영
및 개선

6. 온-오프라인 거래·알선 등
록기준 및 절차 등 제도 운영

7.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에 따
른 소비자 피해근절에 관한

사항

8.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지
도 · 감독
9. 자동차폐차업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폐자동차 부품 재활용대책
수립
11. 자동차관리 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전산정보 이용승인
및 연계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관리사업 제도 및 운
영에 관한 사항
14.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에 관
한 사항
15. 자동차검사 · 자동차 내압용
기검사 기준 · 방법 설정 및
개선에 관한 제도 운영
16. 자동차 종합검사 기준 · 방
법 설정 및 개선 · 보완에 관
한 제도 운영
17. 택시미터 검정기준 · 방법
등 검정제도 운영
18. 기계 · 기구의 정밀도검사
대상 및 기준 · 방법 등 제도
운영

19. 이륜자동차 관리사업 · 검사
제도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2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지정
·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손해배상법령 및 제
도의 운영 및 개선
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운영
23. 자동차 책임보험 분담금 관
리자, 정부보장사업자 및 의무
보험가입관리전산망 운영자에
대한 지도 · 감독
24.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정리
위원회 구성 · 운영
25.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
운영
26.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
의위원회 지도 · 감독
27. 자동차사고 입원환자 외출
· 외박 관리 및 진료기록부
검사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책 및 자동차 사고 피
해자 등 지원사업 운영
29. 자동차보험 정비수가제도

	<u>관리 · 운영</u> 30. <u>자동차책임보험 표준약관</u> <u>기준설정에 관한 사항</u> 31. <u>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u> <u>재활시설의 설치운영</u> 32. <u>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u> <u>재활사업 체계 및 제도개선</u> 33. <u>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구</u> <u>성 및 운영</u> 34. <u>재활시설 위탁운영자 지도</u> <u>· 감독</u> 35. <u>자동차 의무보험(공제)의 가</u> <u>입관리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u> <u>운용에 관한 업무</u> 36. <u>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u> <u>업의 공제제도 운영, 공제조합</u> <u>인가 및 지도 · 감독</u> 37. <u>운수사업자단체 공제분쟁조</u> <u>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u> 38. <u>자동차번호판 제도에 관한</u> <u>사항</u>
제22조(국토관리사무소) ① (생략)	제22조(국토관리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논산국토관리	② ----- -----

사무소장,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김해국토관리사무소

③ ~ ⑧ (생략) 제60조의3(<u>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u>) ① <u>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u>의 단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u>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u>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제61조(한시정원) ① ~ ④ (생략) ⑤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2</u>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⑥ ~ ⑫ (생략) 국토교통부령 제58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종전의 국토교통부령 제520호 국토교통부와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60조의3(<u>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u>) ① <u>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u> ----- -----. ② <u>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u>--- ----- -----. 제61조(한시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2024</u>년 ----- ----- -----. ⑥ ~ ⑫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령 제58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 -----
--	---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8명) 중 제5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원 1명(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illegible]

국토교통부령 제693호 국토교통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93호 국토교통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스마트도시팀은 2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20

23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③ (생략)

국토교통부령 제748호 국토교통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공정건설추진팀,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및 디지털도로팀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공정건설추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공
정건설추진팀장이 분장하는 사
항은 건설정책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장
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
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

25년-----.

②·③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령 제748호 국토교통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공정건설지원팀

-----.

② -----

----- 공
정건설지원팀장-----
-----.

③ -----

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분장한다.

④ (생략)

국토교통부령 제112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도심항공정책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도심항공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도심항공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첨단항공과장이 분장한다.

국제항공과장-----.

④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령 제112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7]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000</u>	<u>1,006</u>	+6
·	·	·	
·	·	·	
일반직 계	<u>989</u>	<u>995</u>	+6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60</u>	<u>61</u>	+1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29</u>	<u>28</u>	-1
·	·	·	
·	·	·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55</u>	<u>57</u>	+2
·	·	·	
행정사무관	<u>87</u>	<u>85</u>	-2

•	•	•	
•	•	•	
시설사무관	<u>57</u>	<u>58</u>	+1
•	•	•	
•	•	•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통 계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 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사서 주사	<u>63</u>	<u>65</u>	+2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 통계주사·공업주사·환경 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 ·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 주사	<u>8</u>	<u>10</u>	+2
행정주사	<u>91</u>	<u>90</u>	-1
•	•	•	
•	•	•	
시설주사	<u>59</u>	<u>62</u>	+3
•	•	•	
•	•	•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	<u>8</u>	<u>10</u>	+2

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 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 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 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 는 방재안전주사보 · ·	·	·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 보 ·	<u>1</u>	<u><삭 제></u>	-1
철도경찰서기보·행정서기 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 환경서기보·항공서기보·시 설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 통신서기보·사서서기보 또 는 운전서기보 ·	<u>7</u>	<u>6</u>	-1
전화상담운영서기보 · ·	<u>1</u>	<u><삭 제></u>	-1
	·	·	

[별표 7의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004</u>	<u>1,010</u>	+6
·	·	·	
·	·	·	
일반직 계	<u>993</u>	<u>999</u>	+6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60</u>	<u>61</u>	+1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29</u>	<u>28</u>	-1
·	·	·	
·	·	·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55</u>	<u>57</u>	+2
·	·	·	
행정사무관	<u>89</u>	<u>87</u>	-2
·	·	·	

·	·	·	
시설사무관	<u>58</u>	<u>59</u>	+1
·	·	·	
·	·	·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통 계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 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사서 주사	<u>61</u>	<u>63</u>	+2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 통계주사·공업주사·환경 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 ·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 주사	<u>8</u>	<u>10</u>	+2
행정주사	<u>80</u>	<u>79</u>	-1
·	·	·	
·	·	·	
시설주사	<u>58</u>	<u>61</u>	+3
·	·	·	
·	·	·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 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	<u>9</u>	<u>11</u>	+2

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	.	.
.	.	.	.
행정주사보	<u>21</u>	<u>20</u>	-1
.	.	.	.
.	.	.	.
철도경찰서기보·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항공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사서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7</u>	<u>6</u>	<u>-1</u>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1</u>	<u><삭 제></u>	-1
.	.	.	.
.	.	.	.

[별표 8]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1</u>	<u>30</u>	-1
일반직 계	<u>31</u>	<u>30</u>	-1
·	·	·	
·	·	·	
공업주사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9]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357</u>	<u>1,347</u>	-10
일반직 계	<u>1,357</u>	<u>1,347</u>	-10
·	·	·	
·	·	·	
시설주사	<u>151</u>	<u>152</u>	+1
·	·	·	
·	·	·	
공업주사보	<u>28</u>	<u>27</u>	-1
·	·	·	
시설주사보	<u>221</u>	<u>219</u>	-2
·	·	·	
·	·	·	
전산서기	<u>7</u>	<u>6</u>	-1
·	·	·	
·	·	·	
기계운영서기	<u>26</u>	<u>25</u>	-1
·	·	·	
·	·	·	
방송통신서기보	<u>2</u>	<u>1</u>	-1

•	•	•	
•	•	•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 보	<u>193</u>	<u>189</u>	-4
•	•	•	
•	•	•	
기계운영서기보	<u>59</u>	<u>58</u>	-1
•	•	•	
•	•	•	

[별표 9의2]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357</u>	<u>1,347</u>	-10
일반직 계	<u>1,357</u>	<u>1,347</u>	-10
·	·	·	
·	·	·	
시설주사	<u>144</u>	<u>145</u>	+1
·	·	·	
·	·	·	
공업주사보	<u>28</u>	<u>27</u>	-1
·	·	·	
시설주사보	<u>216</u>	<u>214</u>	-2
·	·	·	
·	·	·	
전산서기	<u>7</u>	<u>6</u>	-1
·	·	·	
·	·	·	
기계운영서기	<u>26</u>	<u>25</u>	-1
·	·	·	
·	·	·	
방송통신서기보	<u>2</u>	<u>1</u>	-1

•	•	•	
•	•	•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 보	<u>193</u>	<u>189</u>	-4
•	•	•	
•	•	•	
기계운영서기보	<u>59</u>	<u>58</u>	-1
•	•	•	
•	•	•	

[별표 1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509</u>	<u>507</u>	-2
일반직 계	<u>509</u>	<u>507</u>	-2
·	·	·	
·	·	·	
철도경찰주사보	<u>163</u>	<u>162</u>	-1
·	·	·	
·	·	·	
철도경찰서기	<u>197</u>	<u>196</u>	-1
·	·	·	
·	·	·	

[별표 11의2]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509</u>	<u>507</u>	-2
일반직 계	<u>509</u>	<u>507</u>	-2
·	·	·	
·	·	·	
철도경찰주사보	<u>161</u>	<u>160</u>	-1
·	·	·	
·	·	·	
철도경찰서기	<u>197</u>	<u>196</u>	-1
·	·	·	
·	·	·	

[별표 12]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16</u>	<u>613</u>	-3
일반직 계	<u>616</u>	<u>613</u>	-3
·	·	·	
·	·	·	
항공주사	<u>164</u>	<u>165</u>	+1
·	·	·	
·	·	·	
행정주사·항공주사·시설 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 통신주사	<u>3</u>	<u>2</u>	-1
·	·	·	
·	·	·	
항공주사보	<u>172</u>	<u>170</u>	-2
·	·	·	
·	·	·	
행정서기	<u>14</u>	<u>13</u>	-1
·	·	·	
·	·	·	

[별표 12의2]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16</u>	<u>613</u>	-3
일반직 계	<u>616</u>	<u>613</u>	-3
·	·	·	
·	·	·	
항공주사	<u>162</u>	<u>163</u>	+1
·	·	·	
·	·	·	
행정주사·항공주사·시설 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 통신주사	<u>3</u>	<u>2</u>	-1
·	·	·	
·	·	·	
항공주사보	<u>172</u>	<u>170</u>	-2
·	·	·	
·	·	·	
행정서기	<u>14</u>	<u>13</u>	-1
·	·	·	
·	·	·	

[별표 16]

국토지리정보원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31</u>	<u>129</u>	-2
일반직 계	<u>131</u>	<u>129</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30</u>	<u>128</u>	-2

[별표 16의2]

항공교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38</u>	<u>337</u>	-1
일반직 계	<u>338</u>	<u>337</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37</u>	<u>336</u>	-1